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9호
- 나. 제 안 자 : 강동길 의원(찬성의원 10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12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01월 07일

2.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근거에,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추가하여,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임원 등의 임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출연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근거법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 하고자 함(안 제1조).
- 조례 적용 대상 출자·출연 기관을 전(全)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출자·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 출자·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서울시가 출자·출연하는 대상 기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안 제출 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8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자기관은 없음. (참고자료 1)
 - 이들 출연기관의 정원은 모두 4,341명이고, 2019년 전체 예산 규모는 8,903억원, 이 중 서울시의 출연금은 3,927억원임.
- 특히, 2015년 이후 7개의 출연기관이 신규 설립됨으로써 공공 서비스 영역의 급격한 확대와 재정소요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다. 근거법령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추가(안 제1조)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이하 “법”) 제18조¹⁾를 추가하고 있음.
- 법 제18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출자·출연의 근거와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의회 동의를 선결요건으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출자·출연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임.
-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 제18조의 사항을 추가 인용하게 되면,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지 않더라도 출자·출연이 일부 이루어지면 조례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라. '출자·출연기관'의 정의(안 제2조)

-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을 '서울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서울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서울시가 직접 설립하지 않은 기관이나 일부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6개 기관과 간헐적으로 출자가 이루어지는 서울주택공사 등의 지방공기업이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게 됨. <표1 참조>
-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여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법 제18조를 근거 법령으로 추가하면, 이들 제외 기관들이 다시 조례상에 출자·출연기관 되어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표 1> 출자·출연기관 대상

현 행	개정안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는 출자·출연기관	개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출자·출연기관
1. 서울의료원 2. 서울연구원 3. 산업진흥원 4. 신용보증재단 5. 세종문화회관 6. 여성가족재단 7. 복지재단 8. 문화재단 9. 시립교향악단 10. 디자인재단 11. 장학재단 12. 평생교육진흥원 13. 50플러스재단 14. 디지털재단 15. 120다산콜재단 16. 공공보건의료재단 17. 기술연구원 18. 관광재단 19. 도시건축비엔날레(설립예정) 20. 서울사회서비스원(설립예정)	⇒
	1. 서울의료원 2. 서울연구원 3. 산업진흥원 4. 신용보증재단 5. 세종문화회관 6. 여성가족재단 7. 복지재단 8. 문화재단 9. 시립교향악단 10. 디자인재단 11. 장학재단 12. 평생교육진흥원 13. 50플러스재단 14. 디지털재단 15. 120다산콜재단 16. 공공보건의료재단 17. 기술연구원 18. 관광재단 19. 도시건축비엔날레(설립예정) 20. 서울사회서비스원(설립예정) 21. 지방공기업평가원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4.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25.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6.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처럼,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 과 「지방출자·출연법」 간의 상호 법적용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닌 기관을 규율하게 되므로 입법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표 2> 입법·법률자문 의뢰 요약

자문 내용	검토의견		
	㉠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추가 (제1조, 제2조, 제22조의3,4에 대한 법 체계성 위반 여부)	법 체계에 위반됨.	조례의 규율범위를 초과, 효력인정여부가 문제됨.	법 체계에 부합되지 않 는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출자출연기관의 정의 (출자출연기관 적용범위 확대)	상위법령에 저촉됨.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효력인정이 어려움.	상위법령과 상충문제 발생 법체계성에 부합되지 않음.

마.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면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7조제6항2)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게 되므로, 현행과 개정 규정간의 중복사항을 먼저 해소해야 할 것임.

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시의회 동의 신설(안 제2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⑥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금은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대의기관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지방재정법」에서도 출자·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2항), 서울시도 세출예산 편성 이전에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다만, 조문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약어의 오류가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함.

<표 3> 수정의견(제22조의3)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2조의3(<u>의회동의 및 보고</u>)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	제22조의3(<u>시의회 동의</u>)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시의회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

사.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시 포함사항 신설(안 제22조의4 신설)

-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출자·출연 사무명 및 추진근거와 필요성, ▷출자·출연 사무의 내용, ▷출자·출연 기관의 개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출자·출연기관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포함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의안 심사에 필수적인 사항이 담겨있어 동의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제출자료 중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이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결과”로 현행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이 매년 11월 정례회 이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작성·완료되는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결과’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동의안 제출 시기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

<표 4> 수정의견(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신설></p>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u>① 시장이</u>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u>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u> <u>7.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u> <u>8. 기타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 <u>9. 출자·출연 기관 성과보고서</u> 	<p>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u>시장</u>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u>5.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u> <u>6.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u> <u>7.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u> <u>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u>

아. 종합의견

- 개정안은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해당 출자·출연 기관과 서울시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같이 서울시가 출자·출연금을 분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차단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음.
- 이에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조례상의 규율 대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동의안의 제출서류 등을 조례로 규율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 과 「지방출자·출연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소관 사무를 넘어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정부나 민간기관을 규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법체계상 부합되지 않는 규정은 명확히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이 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규정과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동의 절차의 내실화와 심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미가 있음.

전문위원	연락처
주우철	02) 2180-8054

<참고자료 1>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출연기관 18, 출자기관 없음)

구 분	의 료 원	연 구 원	산 업 진 흥 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지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설립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연구원육성조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설립일	'82. 9. 30.	'92. 10. 1.	'98. 3. 31.	'99. 6. 7.	'99. 7. 1.	'02. 1. 10.	
대표자 (임기)	김민기 (63년생) ('18. 6. 1. ~ '21. 5. 31.)	서왕진 (64년생) ('17. 4. 28. ~ '20. 4. 27)	장영승 (63년생) ('18. 11. 1. ~ '21. 10. 31)	한종관 (58년생) ('18. 9. 21. ~ '21. 9. 20.)	김성규 (63년생) ('18. 9. 21. ~ '21. 9. 20.)	강경희 (59년생) ('16. 3. 7. ~ '19. 3. 6.)	
조 직	4부 1사업단 9센터 25진료과 4실 21팀 1연조 1위원회	감사실 1본부 6실 3센터	1실 7본부 32팀 (31팀, 1센터)	2부문 2실 5부 1센터 / 4지역본부 18지점 1센터	3본부 1실 15팀 9예술단	3실 8팀	
정원내	정원 (무기계약 293명 포함)	223명	431명	342명	351명	111명	
	현원 (무기계약 270명 포함)	218명	421명	344명	267명	108명	
정원외	무기	-	-	-	150명	-	
	기간제 단시간	152명 -	72명 4명	19명 2명	78명 -	34명 -	28명 -
이사	정원	13명	12명	15명	8명	15명	21명
	현원	10명	11명	13명	8명	13명	11명
감사	정원	1명	2명	2명	1명	2명	2명
	현원	1명	2명	1명	1명	1명	2명
'19 예산	본 예산	1,865억원	387억원	1,696억원	1,227억원	520억원	128억원
	추경 예산	-	-	-	-	-	-
서울연구비	~'18 (누적액)	661억원	2,848억원	3,904억원	3,769억원	4,521억원	866억원
	'19	186억원 (보조금)	298억원	531억원	66억원	328억원	89억원
주요 사업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행 -간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	-연구 사업 : 자체 과제 : 수탁 과제 : 협약 과제 -공개기술행사 -국내외 협력사업	-인스투프 청원자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국내외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매출증대 지원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R&D지원 및, 지식재산화 지원 등 기업기술 경쟁력 강화 -에너타운 활성화 및 우수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산업활성화 -DMC,마곡,G밸리 등 산업거점 기반조성 및 거점별 활성화	-신용보증지원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진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세종문화회관 운영 -공연 예술진흥 및 작 -업전시 활동·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수 -집·관리, 보급 및 조 -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 -류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법인의 운영보존 자금 -의 적립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서울시 위탁사업 -기타 문화시설운영과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여성가족 정책 연 -구·개발 -여성 사회활동 네트 -워크의 거점화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차원화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 -성화를 위한 사업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 활동 강화사업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등	

구 분	복 지 재 단	문 화 재 단	시립교향악단	디 자 인 재 단	장 학 재 단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설립 목적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 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설립 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설립조례	-평생교육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설립일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09. 1. 8.	'15. 3. 12.	
대표자 (임기)	홍영준(74년생) ('18. 9. 21.~ '21. 9. 20.)	김대일(66년생) ('18. 9. 20.~ '21. 9. 19.)	강은경(70년생) ('18. 3. 1.~ '21. 2. 28.)	최경란(62년생) ('18. 4. 16.~ '21. 4. 15.)	유광상(54년생) ('18. 9. 27.~ '20. 9. 26.)	김영철(57년생) ('18. 3. 5.~ '21. 3. 4.)	
조직	1실 1센터 1지원단 3본부 1실	2실 4본부 1지원단 1극장 16팀	1본부 4팀 1감사역 1예술단	4본부 1실 1역 2센터 1사무국	1사무국 2부	2국 6팀	
정원내	정원	164명	147명	152명	13명	25명	
	현원	162명	147명	130명	10명	25명	
정원외	무기	-	-	4명	-	1명	
	기간제	20명	50명	13명	28명	19명	
	단시간	0명	-	-	-	-	
이사	정원	10명	15명	15명	15명	13명	
	현원	9명	14명	12명	10명	7명	
감사	정원	2명	2명	1명	2명	2명	
	현원	1명	1명	-	2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381억원	699억원	206억원	599억원	119억원	96억
	추경 예산	-	-	-	-	-	-
시출연기관	~'18 (누적액)	2,823억원	2,677억원	1,595억원	1,868억원	1,185억원	127억원
	'19	324억원	501억원	136억원	369억원	111억원	56억원
주요 사업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복지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복지 분야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복지 분야 연세 교류 및 민간의 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익목적 공연 해외공연 관내공연 (정기공연, 기념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사업 음반 녹음, 발매	디자인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패션봉제산업 육성 디자인기반사업 운영 서울시립디자인 연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대학분야 장학사업 공익인재분야 장학사업 고교/히나고 분야 장학사업 재능분야 장학사업 서울평화희망장학금 기타 지정기탁 장학사업	평생교육진흥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 소외계층 평생교육	

구 분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의료재단	기술연구원	관광재단	
설립목적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혁신그룹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 도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설립근거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법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일	'16. 4. 28.	'16. 5. 25.	'17. 4. 24.	'17. 7. 6.	'18. 3. 27	'18. 4. 23	
대표자(임기)	김영대(60년생) ('16. 3. 9. ~ '19. 3. 8.)	이치형(64년생) ('16. 6. 1. ~ '19. 5. 31.)	김민영(67년생) ('17. 4. 19. ~ '20. 4. 23.)	이영문(62년생) ('17. 7. 24. ~ '20. 7. 23.)	고인석(59년생) ('18. 10. 10. ~ '21. 10. 9)	이재성(59년생) ('18. 4. 23. ~ '21. 4. 22.)	
조직	1국 1본부 3캠퍼스	1실 1본부 4팀	2본부 12팀	3부 1실	2본부 7실	4본부 1실	
정원내	정원	76명	30명	420명	30명	52명	132명
	현원	71명	25명	408명	24명	30명	52명
정원외	무기	4명	-	12명	-	-	-
	기간제	17명	5명	-	11명	-	92명
	단시간	-	2명	-	1명	-	8명
이사	정원	10명	8명	10명	10명	10명	16명
	현원	10명	8명	9명	10명	8명	9명
감사	정원	2명	2명	1명	2명	2명	2명
	현원	2명	2명	1명	2명	2명	1명
'19 예산	본 예산	153억원	85억원	212억	41억원	126억원	363억
	추경 예산	-	-	-	-	-	-
서울시 예산	'18 (누적액)	305억원	198억원	358억원	65억원	68억원	150억원
	'19	142억원	82억원	201억원	37억원	109억원	361억원
주요사업	-장년층 인생재설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사업개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제공 등	-서울디지털 경제 육성 -디지털산업 지원 -디지털 서울구현 및 디지털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구정 상담 제공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인력 양성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발굴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 운영 및 관리	-싱크탱크로서 정책 연구 및 평가 -서울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역사회 건강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자원개발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 융합 연구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참고자료 2〉

2019회계연도 출자·출연 사전의결기관 현황

	소관부서	부 의 안 건 명	대상기관	소관상임위
1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기 획 경 제
2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재단	보 건 복 지
3	경 제 정 책 과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기 획 경 제
4	복 지 정 책 과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	서울시복지재단 50플러스 재단	보 건 복 지
5	교 통 정 책 과	서울특별시 지하철분야 출자 동의안	서울교통공사	교 통
6	문 화 정 책 과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향 디자인재단	문 화 체 육 관 광
7	관 광 정 책 과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관광재단	문 화 체 육 관 광
8	시 민 봉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120다산콜재단	문 화 체 육 관 광
9	문 화 정 책 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문 화 체 육 관 광
10	교 육 정 책 담 당 관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장학재단	행 정 자 치
11	평 생 교 육 담 당 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진흥원	행 정 자 치
12	자 치 행 정 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자원봉사센터	행 정 자 치
13	주 택 정 책 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서울주택도시공사	도 시 계 획 관 리
14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공공보건의료재단	보 건 복 지
15	안 전 총 괄 과	서울특별시 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기술연구원	도 시 안 전 건 설
16	도 시 공 간 개 선 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 시 계 획 관 리
17	세 제 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행 정 자 치
18	복 지 정 책 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서울사회서비스원	보 건 복 지

〈참고자료 3〉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 2019. 2. 11.(월), 공기업담당관 》

□ 조례개정 개요

-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 개정목적 : 서울시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조례를 적용할 근거 마련
- 진행경위 : 개정안 발의('18.12.31) → 입법예고('19.1.11. ~ 1.18.)
 -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상정예정('19.2.22. ~ 3.8.)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근거법령 확대**
 - 기존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정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18조

〈지방재정법 18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기존 : 18개 기관(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개정 : 6개 기관 추가(법정분담 등 개별근거법에 따라 서울시가 출연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한국지방세연구원

- **임원임면 규정 신설** :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없을 경우 동 조례 적용

○ 출자·출연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 및 제출서류 명시

※ 제출서류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성과보고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

작성 자 공기업담당관 : 고광현 ☎ 2133-6770 출자출연팀장 : 박경길 ☎ 6780 담당 : 김규동 ☎ 6783

□ 검토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① 지방공기업 ② 공공기관 ③ 지방자치단체간 발전 및 그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기관 ④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 2019년 시의회 사전의결 제외기관 : 8개 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금회 개정안에서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18조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출자출연법에 따라 제외되는 기관까지 포함하게 되어 상위 근거법간 상호 법적용 충돌 및 상위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제한하거나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목적이며 조례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상이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8조가 조례의 근거로써 문제가 있을 경

우,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시의회 동의 및 제출서류 조항(제22조의3 및 4)을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는 출자출연의 내용과 필요성을 사전 의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과 보고서 등을 사전동의안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개정조례안 조항별 검토의견 및 법률 자문 결과

- **【제1조】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제한하는 취지이나, 본 조례는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입법목적 및 규정사항이 다르며,**
 - ※ 지방재정법 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제한에 관한 규정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음(법무법인 '참진')
 - ※ 지방재정법 18조의 취지는 출자·출연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감독을 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음(정부법무공단)
- **【제2조】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다루는 기관의 적용범위가 달라 조례 적용 시 근거법이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고,**
 - 지방출자출연법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지 않은 기관과 사단법인 등을 제외하나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 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
 -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적용할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들에게 지방출자출연법 내용을 적용해야하는 문제 발생
 - ※ 조례의 개정 의도가 「지방재정법」 제18조를 추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되어서 무효이고, 또 위 상위법 및 조례의 목적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부적법(법무법인 '참진')
 - ※ 조례 적용범위 확대 시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시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는 모순 발생(정부법무공단)
- **【제3조 2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음**
 - ※ 동 조례 7조 6항 :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2조의 3 및 4】 또한, 시의회 사전의결의 범위는 출자·출연 필요성을 고려한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성과보고서 등을 출자·출연 사전동의안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의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2015.10.19.)